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대 중 문 화 예 술 산 업 발 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21조의2(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) 및 제21조의3(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),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동법 제26조제2항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)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2)
- 나.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·자료 제출 등 근거 마련(안 제2조의2)
- 다.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증명서류 정비(안 제6조제1항제4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4항”을 “법 제6조제4항 또는 제21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)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(이하 “청소년보호책임자”라 한다)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.

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
2. 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 (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에 한한다)
3. 법 제24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 계약의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침해 여부 검토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독립된 사무소”를 “사무소”로, “제출한다)”를 “제출한다)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·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.	제2조의2(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) ----- 법 제6조제4항 또는 제21조의3 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2. (현행과 같음) 제5조의2(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)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(이하 “청소년보호책임자”라 한다)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.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1.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대

	<u>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</u> 2. <u>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 (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에 한한다)</u> 3. <u>법 제24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 계약의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침해 여부 검토</u> 4. 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 및 보관</u>
제6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)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6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) ① -----
1. ~ 3. (생략)	-----
4. <u>독립된 사무소</u> (주된 사무소	-----

로 한정한다)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)	----- ----- 제출한다)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62